

# 해외연수(복지) 장학금 제출서류에 관한 안내

## 【제출 서류 목록】

1	자가점검표*
2	장학금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*
3	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*
4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*
5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*
6	출입국증명서 or E-ticket*
7	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
8	세부 지원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

※ (1) ~ (6)는 공통(필수 제출), (7) ~ (8)은 해당자에 한함

※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할 것

※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김 가능

### 1. 자가점검표\*

- 첨부양식(3. 2026-1학기 교환학생 해외연수(복지) 장학금 신청\_제출서류 자가점검표) 기재하여 제출

### 2. 장학금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\*

- 첨부양식(4. 2026-1학기 교환학생 해외연수(복지) 장학금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) 기재(자필서명 필수)

### 3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\*

발급처	-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교내 ECC 학생서비스센터 앞 발급기 - 인터넷 발급 신청 · 정부24(주민등록등본) · <a href="#"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</a> 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)
발급 기준	- 본인 기준으로 발급 - 제출일 기준 <u>1개월 이내</u> 발급

#### ※ 상황별 제출 서류(예시)

(1)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,

① [주민등록등본]

② 학생 본인명의 [가족관계증명서]까지 총 2부 제출

(2) 부모가 이혼한 경우,

① [주민등록등본]

② 학생 본인명의 [가족관계증명서]

③ 부모의 [혼인관계증명서]까지 총 3부 제출

(3)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,

① [주민등록등본]

② 학생 본인명의 [가족관계증명서]까지 총 2부 제출

(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)

※ (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)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 한쪽만 표기되는 경우, 표기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관련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)는 제출할 필요 없음

#### 4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\*

발급처	- 인터넷 발급 신청: <a href="#">국민건강보험공단</a>
발급 기준	- 부양자(부·모) 각 1부 - 제출일 기준 <b>1개월 이내</b> 발급
발급 대상 항목	- <b>월별 건강보험료</b> 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)
발행 신청년월	- 1학기 파견: 전년도 - 2학기 파견: 당해 연도 1월 ~ 7월 (예) 2026-1학기 파견 학생인 경우,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
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	- <b>부·모 중 1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,</b>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] 함께 제출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- <b>해당 기간에 이직하였거나 부양자-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,</b> [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] 함께 제출

#### ※ 상황별 제출 서류(예시)

- (1) 부·모, (본인)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,  
→ 부·모(본인) 각각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 제출
- (2) 부·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,  
→ ①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  
②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]까지 총 2부 제출
- (3) 부·모의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에서 특정 기간의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 
→ ① (1) 또는 (2)에 따라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 제출  
② ①에서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해당 기간에 대한 [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]  
③ 해당 기간 동안의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]
- (4) 조부모 및 형제·자매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,  
→ ①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  
②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]  
③ 피부양자(본인 및 부모) 각각의 [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]
- (5) 학생 본인이 기혼인 경우  
→ ① 가입자(본인 혹은 배우자)의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  
② 부양자(납부자)의 [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]  
③ 피부양자의 [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]
- (6)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
→ 세대주(부양자)의 [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]

## 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\*

※ 납부액이 0원이어도 필수 제출

발급처	- 방문 발급 신청: 구청(세무부서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※ 구비 서류 등 세부 안내 참고: <a href="#">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</a> ※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
발급 기준	- <b>부양자(부·모) 및 본인 각 1부 (반드시 본인 서류 포함 제출)</b> -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, 본인과 배우자 각 1부씩 제출 - 제출일 기준 <b>1개월 이내</b> 발급
발급 대상 항목	- 재산세 중 <b>건축물, 토지, 주택</b> 에 한함(주민세, 교육세, 자동차세는 해당 없음) ※ 반드시 <b>재산세(건축물), 재산세(토지), 재산세(주택)</b> 만 표기되도록 발급할 것
과세년도	- 전년도 (예) 2026-1학기 파견 학생의 경우,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
대상 지역	- 전국 자치단체
전국 단위 미과세 증명서	- 전국에 납부내역 없는 경우. “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”이 기재된 [전국 단위 미과세 증명서] 제출 ※ 단, 전국 어느 1개 지역에서라도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, <u>온라인 발급 불가</u> -> (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) - 인터넷 발급 신청 가능: <a href="#">위택스</a> · 부양자(부/모) 각각 본인인증 및 로그인 → “납부/납부결과” 선택 → “증명서 발급” 항목에서 “세목별 과세증명서” 선택 → 검색 설정: 관할자치단체 “전체” / 과세년도 입력 / 세부 항목 “토지, 주택, 건축물” → 부수, 사용목적 등 기입 후 발급 신청

※ 상황별 제출 서류(예시) - 재산세 중 **건축물, 토지, 주택**에 한함(주민세, 교육세, 자동차세는 해당 없음)

- (1) 본인, 부양자(부·모) 모두 전국에 과세 대상이 없는 경우,  
→ 학생 본인, 부양자(부·모)의 [전국 단위 미과세 증명서] **각 1부씩** 제출
- (2) 부가 서울 서대문구에 납부 내역이 있고, 본인과 모는 전국에 과세 대상이 없는 경우,  
→ ① 부의 서울 서대문구에 대한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]  
② 부의 서울 서대문구를 제외한 서울 내 다른 구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[미과세 증명서]  
(\* 온라인 발급 불가)  
③ 부의 서울을 제외한 (전국의) 다른 지역에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[미과세 증명서]  
④ 모의 [전국 단위 미과세 증명서]  
⑤ 학생 본인의 [전국 단위 미과세 증명서]까지 **총 5부** 제출
- (3) 부가 서울 마포구에 납부 내역이 있고, 모는 부산 남구에 납부 내역이 있고, 학생 본인은 전국에 과세 대상이 없는 경우,  
→ ① 부의 서울 마포구에 대한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]  
② 부의 서울 마포구를 제외한 서울 내 다른 지역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[미과세 증명서]  
③ 부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[미과세 증명서]  
④ 모의 부산 남구에 대한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]  
⑤ 모의 부산 남구를 제외한 부산 내 다른 지역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[미과세 증명서]  
⑥ 모의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[미과세 증명서]

⑦ 학생 본인의 [전국 단위 미과세 증명서]까지 제출 까지 총 7부 제출

(4) 부가 서울 마포구에 납부 내역이 있고, 모는 부산 남구에 납부 내역이 있고, 학생 본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

- ① 부의 서울 마포구에 대한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]  
 ② 부의 서울 마포구를 제외한 서울 내 다른 지역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[미과세 증명서]  
 ③ 부의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[미과세 증명서]  
 ④ 모의 부산 남구에 대한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]  
 ⑤ 모의 부산 남구를 제외한 부산 내 다른 지역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[미과세 증명서]  
 ⑥ 모의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[미과세 증명서]  
 ⑦ 학생 본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대한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]  
 ⑧ 학생 본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를 제외한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는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[미과세 증명서]  
 ⑨ 학생 본인의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할 [미과세 증명서]까지 총 9부 제출

## 6. 출입국증명서(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)\*

※ 출입국 증명서 미제출 시, 장학금 미지급 및 기 지급된 경우에는 회수

제출 기준	- 출국 전인 경우, E-ticket 제출 - 단, 출국 후 출입국 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· 메일 제출: 국제교류팀(oia@ewha.ac.kr)
-------	---

## 7.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(분위) 통지서

발급처	- 인터넷 발급 신청: <a href="#">한국장학재단</a> · 장학금>증명서>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선택 → 파견학기에 대한 통지서 발급 - 방문 발급 신청: 구청(세무부서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발급 기준	-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발급 및 제출 - 미제출 시 8분위 이상으로 간주하여 소득분위에 대한 점수 없음

## 8. 세부 지원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

- 장학금 신청서에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항목 등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경우, 해당 증빙 서류 제출 필수

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항목	항목별 증빙자료
㉠ 독립유공자의 직계(손)자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호(순국선열)와 제2호(애국지사)에 해당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독립유공자 유족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㉡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㉢ 고엽제 후유증 수당지급 대상자 자녀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고엽제 후유증 수당지급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㉣ 5·18 민주유공자 자녀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	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(또는 5·18 민주유공자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
㉤ 장애등급 1~3급 해당자의 자녀	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㉥ 다문화가정 자녀	가족관계증명서, 부/모의 외국인 등록증
기타(부채 등)	내용증빙이 가능한 서류 (부채증명서의 경우, 금융기관 발행 서류에 한함)